





보건복지부	보	도 참	ュ	자 료					
배 포 일	2020. 5. 15. / (총 11매)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홍 승 령	전 화	044-202-3575					
전 략기 획 팀	담 당 자	장 태 영	신 와   	044-202-3576					
보건복지부	과 장	오 창 현	전 화	044-202-2470					
의료기관정책과	담 당 자	윤 동 빈	인 확	044-202-2474					
보건복지부	과 장	홍 정 익	전 화	044-202-2860					
정신건강정책과	담 당 자	방 은 옥	인 확	044-202-2874					
보건복지부	과 장	조 경 숙	전 화	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	담 당 자	최 문 선	그 확	044-202-3512					
인사혁신처	과 장	이 경 한	전 화	044-201-8260					
공개채용2과	담 당 자	정 호 윤	[건 확	044-201-8257					
보건복지부	과 장	임 은 정	전 화	044-202-2360					
국제협력담당관	담 당 자	김 성 경	그 각	044-202-2354					
중앙사고수습본부	팀 장	양 윤 석	전 화	044-202-3155					
생활방역팀	담 당 자	김 성 철	한 확	044-202-361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및 조치계획 △고위험 집단시설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 방안 △국가 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관리 방안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상황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방안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관리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 이 자리에서 박능후 1차장은 어르신들에 대한 감염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앞으로 재유행에 대비하여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 등 예방 및 조기발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1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 및 조치 계획

중앙재	난안전	过대책	본부에/	서는	각 지빙	사치	단체와	함께	각	시·도의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발생	상황과	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	하였다.

- □ 정부는 그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들이 **적시에 검사**를 받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독려해왔다.
  - 15개 시도에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하였으며, 미시행하는 강원도와 제주도의 경우 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심야 시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5월 14일에는 지자체, 경찰, 식약처가 클럽, 감성주점 등 전국 9,932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시설 중 7,502개소가 영업 중지 중임을 확인하였고, △이격 거리 위반 22건 △마스크 미착용 25건 등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 □ 이태원 클럽 관련 환자 발생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서울시는 고3 학생이 등교하기로 예정된 5월 20일(수)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24개 소방서 구급대가 학교 내 유증상자를 선별진료소로 신속하게 이송하도록 하는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때, 그 피해가 자신에게 미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태원 클럽 등 감염 발생지역을 방문한 국민께서는 검사와 역학조사에 성실히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2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감염 관리**를 위한 **고위험 집단시설**(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감염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하였다.
- □ 그간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에서는 확진자 발생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입원/입소자의 건강상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적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해 왔다.
  - 주기적으로 기관 종사자의 해외여행 이력을 확인하였으며, 의심 증상 발견 시 검사를 실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였다. 또한 기관에 공적마스크를 배부하여 종사자·간병인의 감염 예방을 지원하였다.
  - 역학조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 입원환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였고,
    -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감염관리교육을 시행하고 외부인의 방문과 면회를 제한하는 등 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외부 감염원 차단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입원자가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경우뿐 아니라 단순 발열, 호흡기 증상이 있는 때에도 격리실 입원료를 지워하고,
    -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감염예방·관리료를 산정하여 고위험 집단시설의 적극적인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 노력을 독려하였다.











- □ 정부는 그간의 **감염예방 노력을 지속**하되 앞으로는 더욱 강화된 관리정책을 적용하여 **고위험 집단시설의 안전한 환경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우선 요양병원/정신병원/요양시설의 신규 입원/입소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기관 내 감염 유입과 확산을 방지한다.
    - 요양/정신병원 신규 입원자(월 6만 명 예상)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5월 13일부터 건강보험에서 검사비용 50%를 지원하고 있다.
    - 요양시설 입소자는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되,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검사비용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에 검사가능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예산으로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 \* 선별진료 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48개 (이중 군 지역 19개)
  - 또한, △국내·외 코로나19 발생 현황 △위기 경보 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상황에 맞는 면회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 그간 지속적인 면회 허용 요청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비접촉적\*인 제한된 면회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 방안을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 \* 예: 환기가 잘 되는 별도 공간(야외 등), 투명 차단막(플라스틱, 비닐 등) 설치 등











### 3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시험 대비 방역 관리 방안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5월 6일 방역 수준이 생활 속 거리 두기 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당초 2월 29일로 예정되었던 5급 공채 공무원 시험을 5월 16일(토)에 전국 32개 시험장에서 시행하기로 하였다.
  - 이는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중 처음으로** 치러지는 것이며, 정부는 응시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방역**관리 대책을 수립하였다.
  - 먼저 인사혁신처는 보건당국에 **출원자 중 확진자, 의사환자 등** 관리대상자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였으며,
    - 응시자의 건강상태, 출입국 이력, 이태원 방문경력 등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5월 8일부터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가격리자인 수험생은 보건당국과 협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하기로 하였다.
    - \* 시험장 1곳당 감독관 4명(간호사 포함) 배치, Level-D 보호구 착용 후 감독 수행
    - 아울러 자진신고시스템을 통해 사전 확인한 정보를 바탕으로 별도 관리가 필요한 경우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 시험 당일에는 **시험장 주 출입구를 단일화**하고 시험장 출입자 모두 **손 소독 및 발열 검사**를 실시하며,
    -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거리유지 전담관리관을 배치하여 대기시간에는 서로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또한 시험실별 수용인원을 25~30명에서 15명 이내로 대폭 감축하며, 시험시행 전후에는 철저한 방역소독, 시험시간·쉬는시간에는 환기를 실시할 예정이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험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험생과 감독관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4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 및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 개최

- □ 코로나19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5월 15일(금) 19시에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한·중·일 보건장관과 WPRO(Western Pacific Regional Office) 사무처장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최신 현황과** 각 국의 대응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 한중일 3국간 상호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3국의 성공적인 방역대책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다.
- □ 정부는 제4차 생활방역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5월 19일(화) 16시에 서울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 \* 위원장, 위원(16명) 민간공동위원장 1, 의약계 7, 인문사회학계 4, 시민사회대표 2, 정부 2
  - **방역상황 평가지표\*** 등을 통해 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후 **코로나 19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태원 클럽 관련 방역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 \* ③최근 2주 평균 1일 신규확진자 수, ⑤확진자 중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⑤신규 집단 발생 현황, ②확진 당시 방역망 내 관리비율











- 특히 시설별 특성, 위험도를 고려하여 유흥시설과 같이 감염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을 대상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방역 지침 마련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또한 **날씨가 더워짐**에 따라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기준에** 대해 검토한다.

## 5 생활 속 거리 두기 추진상황

- □ 5월 14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원·독서실 1,260개소, △전통 시장 849개소 등 총 43,234개소 시설을 점검하여 **출입자 관리대장** 미작성, 이격 거리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542건에 대한 행정 지도를 실시하였다.
  - 서울에서는 영어유치원·원어민학원 1,212개소를 특별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마스크 미착용 등 20건을 발견하고 행정지도를 하였다. 인천에서는 스터디카페, 공중위상관리업소 현장을 점검하고 이격 거리 미준수 등 161건 위반사례를 확인하고 시정요구하였다.
  - 현장점검과 함께 긴급재난문자 77회, TV자막방송 3회, SNS 홍보 485회를 실시하여 국민이 생활 속 거리 두기 원칙을 지속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민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인식**을 갖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 2.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 홍보자료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 2. 대한민국 입국자를 위한 격리 주의사항 안내
  -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 5. 확진환자 격리해제 시 생활수칙
  -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 9. 마스크 착용법
  - 10.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 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입니다.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드는 복지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 권고 사항

-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 별첨

####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 2(감염병위험 시 정보공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된 사항 중 사실과 다르거나 의견이 있는 당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7.6.]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① 제27조의3(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예보 또는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법 제34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거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7.]

####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 붙임2

# 코로나19 심각 단계 행동수칙

### (일반국민)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 [고위험군]: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유증상자]: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 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